



---

6 ( ) 10 2

2 .  
· · 1  
· · ( )  
· · 가

7 ( ) · · 5

가  
· ,  
· < 2008.3.3, 2010.3.19 >  
· 14 2

· < 2008.3.3, 2010.3.19 >

8 ( ) 15 2

· < 2008.3.3, 2010.3.19 >

- 1.
- 2.
- 3.

9 ( ) 16 3

1  
· < 2008.3.3, 2010.3.19 >

1. 1
2. 1

9 2( ) 14 2

」 42 4  
· < 2008.3.3, 2010.3.19 >

[ 2005.6.30 ]

9 3( · · ) 15 · ·

3 .

---

[ 2005.6.30]

10 <1999.8.9>

11 ( ) 18 .  
( " " )  
3 3

1. 1
2. 가 1 ( )

[ 1999.8.9]

12 ( ) . . 20 . 6  
12 5 .

. < 2008.3.3, 2010.3.19 >

. < 2008.3.3, 2010.3.19 >

< 1 ,2010. 3.19 >

1 ( ) . < >

2

3 ( ) <74>

<75>

2 2 , 7 1 3 , 8 , 9 , 9 2, 12 1

. 2 , 1 2 가 (4) 1 " 가 " "

"

1 15 " 가 " " "

<76> <84>



<p>라. 영양개선사업</p>	<p>(4)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5)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 사업  (6) 불소용액 양치사업  (1) 영양교육사업  (가) 영양지도의 계획·분석  (나) 영양교육자료의 개발·홍보 및 영양교육  (다) 지역주민의 영양지도(영유아·임산부·수유부·노인·환자 및 성인의 영양관리) 및 상담  (2) 영양개선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3) 국민영양상태에 관한 평가사업  (가) 영양조사 및 지역주민의 영양평가 실시  (나) 지역주민의 영양조사결과 자료활용  (4)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현황파악 및 급식업무지도  (5) 기타 영양과 식생활개선에 관한 사항</p>
<p>2.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가. 법정전염병 및 지정 전염병의 예방·관리</p>	<p>(1) 전염병예방을 위한 주민홍보·계도  (2) 법정전염병의 신고수리  (3)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전염병환자 또는 의사환자에 관한 환자명부의 작성비치 및 상황보고  (4) 디프테리아·폴리오·백일해·홍역·파상풍·결핵·B형간염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염병에 관한 정기·임시 예방접종 실시  (5) 예방접종의 공고  (6) 예방접종의 유예 및 예방접종유예신고필증의 교부  (7) 예방접종증명서의 교부  (8)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  (9) 예방접종의 보고접수 및 보관  (10) 제1종전염병환자의 수용에 필요한 격리병사·격리소 설치  (11) 제1종전염병의 예방에 필요한 소독소 설치  (12) 제3종전염병의 예방에 필요한 진료소 설치  (13) 제1종전염병환자의 격리수용장소의 지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4) 제3종전염병환자중 격리수용환자의 범위지정</li> <li>(15) 제1종전염병 환자에 대한 방역조치</li> <li>(16) 예방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li> <li>(17) 방역기동반의 편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소독등의 방역조치</li> <li>(나) 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의 예측조사</li> </ul> </li> </ul>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 또는 수시검진</li> <li>(2)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역학조사</li> <li>(3)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확인서 발급</li> <li>(4) 감염자관리명부 작성·관리</li> </ul>
다. 결핵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li> <li>(2) 결핵진료소와 결핵요양소의 설치</li> <li>(3) 정기건강진단 날짜 또는 기간의 지정</li> <li>(4) 예방접종의 공고</li> <li>(5) 예방접종증명서의 교부</li> <li>(6)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의료의 실시</li> </ul>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p>가.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의 세부계획 수립·시행</p>
	<p>나. 모자보건기구의 설치·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임신부의 산전관리·산후관리 및 분만관리와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li> <li>(2)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li> <li>(3) 피임시술 및 피임약제의 보급에 관한 사항</li> <li>(4) 부인과질병 및 그에 관련되는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li> <li>(5) 장애아동의 발생예방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li> <li>(6) 보건에 관한 지도·교육·연구·홍보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li> </ul>

	<p>다. 임산부의 사망·사산 및 신생아의 사망보고 접수</p> <p>라.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 대한 모자보건수첩의 발급</p> <p>마. 임산부·영유아에 대한 정기 건강진단·예방접종 및 의료지원</p>
<p>4. 노인보건사업</p>	<p>가. 노인요양시설에의 입소조치</p> <p>나.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 및 보건교육</p> <p>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p> <p>라. 건강진단의 공고</p> <p>마. 건강진단기관의 지정</p>
<p>5.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p>	
<p>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p>	<p>(1) 식품위생감시원의 임명</p> <p>(2) 식품접객영업시설의 설치지도</p> <p>(3)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p> <p>(4)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수거</p> <p>(5)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허가 및 취소</p> <p>(6)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p>
<p>나. 위생접객업·위생관련영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의 위생개선 지도</p>	<p>(1) 위생접객업소의 등급 설정</p> <p>(2) 위생접객업의 신고수리</p> <p>(3) 위생관련영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의 신고수리</p> <p>(4) 위생접객업의 휴업·폐업신고수리</p> <p>(5) 영업장소의 출입·검사</p> <p>(6) 공중위생에 관한 지도와 명령</p> <p>(7) 시설·설비의 개수명령 및 폐기처분</p> <p>(8) 영업정지등 행정처분</p>
<p>다.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p>	<p>(1) 공중이용시설의 신고수리</p> <p>(2) 공중이용시설의 검사 및 시정지시</p> <p>(3) 위생관리담당자의 지정·해제신고수리</p> <p>(4) 공중위생감시원의 임명</p>
<p>6.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p>	
<p>가. 의료기관의 개설 및 지도에 관한 사항</p>	<p>(1)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의 개설신고수리</p> <p>(2)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수리</p>

<p>나. 의료에 관한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p>	<p>(3) 의료기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운영신고수리 (4) 의료기관의 휴업·폐업신고수리 (1) 의료기관의 업무개시명령 (2)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보고명령 (3) 업무상황·시설 또는 진료기록부·간호기록부 등의 검사 (4) 의료시설·장비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처분 (5)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허가취소·폐쇄처분 및 과징금부과 (6) 의료지도원의 임명</p>
<p>7.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p>	<p>가.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나. 안경업소의 휴업·폐업신고수리 다. 안경업소의 개설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지도감독 라. 안경업소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마. 과태료의 부과·징수 바. 의료기사등의 면허증 회수 사. 치과기공소의 인정 및 휴업·폐업신고수리 아. 치과기공소에 대한 감독</p>
<p>8.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p>	<p>가. 구급차의 운용 나. 구급차의 운용신고수리 다. 대량환자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의 수립 라. 대량환자발생 및 활동상황보고</p>
<p>9.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p>	<p>가. 공중보건의사의 시·군·구안의 근무지역변경 나. 공중보건의사의 인사관리부 비치 다. 공중조건의사의 근무지역이탈허가 라.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이탈보고 마.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상황평가보고 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한 지도·감독 사.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아. 보건진료원의 임용 및 근무지역 지정 자. 보건진료원 직무교육대상자의 선발 차. 보건진료원의 면직 카. 보건진료원의 근무지역이탈허가 타. 보건진료소의 운영상황보고</p>



	<p>파. 보건진료소의 업무지도·감독  하. 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지도·감독</p>
<p>10. 약사 및 대마관리에 관한 사항</p>	
<p>가. 약사에 관한 사항</p>	<p>(1) 약국의 개설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2) 약국관리자의 승인  (3) 약국의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수리와 휴업한 약국의 재개신고수리  (4) 약국제제 또는 조제실제제의 제조품목신고수리 및 신고증교부  (5) 의료용구판매업의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6) 의약품취급자에 대한 보고명령·시설과 서류의 검사 및 의약품의 수거  (7) 의약품생산명령 또는 업무개시명령  (8) 의약품의 폐기 또는 처치명령  (9) 시설의 개수명령 또는 사용금지명령  (10) 약국의 개설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  (11) 약사감시원의 임명</p>
<p>나. 대마의 관리에 관한 사항</p>	<p>(1) 대마취급자의 허가 및 허가증교부  (2) 대마의 재배·생산·폐기 및 연구의 관리  (3) 대마취급자의 업무폐지신고수리  (4) 대마취급자격상실자의 대마처리에 관한 사항  (5) 장부와 서류의 검사 및 대마의 수거  (6) 대마취급자의 허가취소  (7) 대마감시원의 임명  (8) 몰수한 대마의 인수·폐기 및 처리  (9) 대마의 운반·보관·소지신고증교부</p>
<p>11.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p>	<p>가.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 및 만성정신질환자의 관리</p>
	<p>나. 사회복귀시설의 설치허가</p>
	<p>다. 사회복귀시설의 폐지·휴지 및 재개신고수리</p>
	<p>라. 사회복귀시설의 설치허가취소 및 사업정지명령</p>
	<p>마. 정신과위원회에 대한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명령</p>

12.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바. 평가입원대상자의 진단 및 입원조치 사. 정신질환자중 입원대상자의 입원치료의뢰 및 통지 아. 정신질환자의 퇴원·가퇴원·처우개선명령 및 입원조치의 해제 방문보건의료사업
13.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가. 일반진료 나. 치과진료 다. 한방진료 라. 만성퇴행성질환자의 등록·관리 마.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4.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가. 전염병환자 및 보균자 발견을 위한 검사 나. 질병발생상황파악을 위한 검사·조사 및 실험 연구사업 다. 민간의료기관이 의뢰한 검사
15. 장애인재활사업 기타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가. 장애인의 파악·관리 나. 장애인의 검진·재활상담 및 시설에의 입소
16.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등에 관한 사업	지역주민에 대한 각종 질병의 유병률 조사

6. 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기능사 및 응급구조사의 기준중 ( )로 표시된 기준은 당해 시·군·구의 여건에 따라 이 기준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7. 영양사는 인구 5만명 미만의 군(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을 제외한 다)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군의 여건에 따라 이 기준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 2. 보건지소

(단위 : 명)

구분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보건지소	1	1	3	1
통합보건지소	1×관할 읍·면수	1×관할 읍·면수	3×관할 읍·면수	1×관할 읍·면수

비 고 : 1. 치과의사는 공중보건의사로서의 치과의사의 인력사정에 따라 이 기준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2.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배치를 고려하여 이 기준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별표 2]

전문인력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제6조제1항관련)

1. 보건소 (단위 : 명)

직종별	구 분	특별시의 구	광역시·구, 인 구 50만명 이상 의 시·구 및 인 구 30만명 이 상의 시	인 구 30 만명 미 만의 시	도 농 복 합 형 태 의 시	군	보건 의료 원이 설 치 된 군
의사	3	3	3	2	2	1	6
치과 의사	1	1	1	1	1	1	1
한 의사	-	-	-	-	1	1	1
조산사	(1)	(1)	(1)	(1)	(1)	(1)	(1)
간호사	18	14	10	10	14	10	23
약사	3	2	1	1	1	1	2
임상병리사	4	4	3	3	4	2	4
방사선사	2	2	2	2	2	2	3
물리치료사	1	1	1	1	1	1	2
치과위생사	1	1	1	1	1	1	1
영양사	1	1	1	1	1	1	2
간호조무사	(2)	(2)	(2)	(2)	(2)	(2)	(6)
의무기록사	-	-	-	-	-	-	1
위생사·	(3)	(3)	(2)	(2)	(2)	(2)	(2)
위생시험사							
정신보건	1	1	1	1	1	1	1
전문요원							
정보처리기사·	(1)	(1)	(1)	(1)	(1)	(1)	(1)
정보처리기능사							
응급구조사	-	-	-	-	-	(1)	1

비 고 : 1. 이 기준은 보건소장을 제외한 기준이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이 기준을 초과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2. 의사 및 치과 의사의 기준은 공중보건 의사를 포함한다.
3. 한 의사의 기준은 공중보건 의사로서의 한 의사가 배치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4. 조산사 및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전체인력의 범위 안에서 간호사에 갈음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의 기준은 보건소에서 위생업무를 관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별표 3] <신설 2005.6.30>

보건소·보건지소의 시설·장비 및 표시기준(제9조의3관련)

I. 시설 및 장비기준

1. 시설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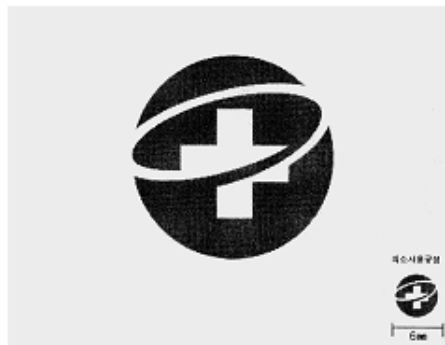
- 가. 진료실 : 일반진찰실, 처치실, 치과진료실, 한방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등 진료에 필요한 시설
- 나. 진료지원실 : 방사선실, 임상검사실 및 필름보관실 등 진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 다. 보건사업실 : 구강보건실, 건강증진실, 재활치료실 및 금연클리닉 등 보건사업에 필요한 시설

2. 장비기준

- 가. 진료실 : 청진기, 청력 측정기, 진찰대, 혈압계, 심전도계, 내시경 및 방사선사진판독기 등 진료에 필요한 장비
- 나. 진료지원실 : 현미경, 원심분리기, 증류수 제조기 및 자동현상기 등 진료지원에 필요한 장비
- 다. 보건사업실 : 방문진료세트, 시력측정기 및 색맹검사표 등 보건사업에 필요한 장비

II. 표시기준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표시는 심볼마크와 함께 해당 지역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공공보건기관 심볼마크>



<표시 예>

